

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이유

도서관의 도로명 주소 변경과 다문화자료실 등의 신설을 반영하고 등록규제와 인권침해 우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,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서 도로명 주소를 변경함(안 제2조)
- 나. 시설 사용승낙의 취소 규정 보완(안 제10조제1항 제4호, 제5호)
- 다. 입관의 제한 사유 중 장애인의 인권 차별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(안 제17조)
- 라. 모자열람실 명칭 변경 및 다문화자료실과 장애인정보누리터 신설과 복사규격 현실화(별표 1, 2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도서관법」 제4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- 3) 입법예고 : 2015. 3~4월중 (20일간)
- 4) 행정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5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6) 성별영향평가 : 모자열람실의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어 안 별표1에 반영함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영천사길 40”을 “독립문공원길 80(현저동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새롬1길 21-1”을 “증가로10길 16-15(남가좌동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129”를 “129(홍은동)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5.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입관의 제한)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별표 1,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도서관 이용시간(제7조 관련)

구 분		평 일	토 · 일요일
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 도서관	유아열람실 어린이열람실 어울림누리터 (다문화자료실)	09:00 - 18:00	09:00 - 17:00
	종합자료실 어울림누리터 (전자정보열람실 멀티문화감상실 장애인정보누리터)	○ 3월 ~ 10월 : 09:00 - 20:00 ○ 11월 ~ 2월 : 09:00 - 19:00	
남가좌새롬 어린이 도서관	유아열람실 어린이열람실	09:00 - 18:00	09:00 ~ 17:00
홍은도담 도서관	유아열람실 어린이열람실	09:00 - 18:00	09:00 ~ 17:00
	종합자료실	○ 3월 ~ 10월 : 09:00 - 20:00 ○ 11월 ~ 2월 : 09:00 - 19:00	

[별표 2]

## 사용료 및 수수료(제11조 관련)

### 1. 사용료

구분	기준	금액	비고
다목적실	1회 3시간	50,000원	다만, 독서프로그램, 문화강좌 등 독서· 문화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대에 사용 가능
문화사랑방	"	30,000원	
강의실	"	30,000원	
문화창작실	"	30,000원	

### 2. 수수료

구분	규격	금액(1면당)	비고
복사(전자복사기) 및 인쇄(프린터기)	A4	30원	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이 직접 복사 및 인쇄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”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<u>영천사길 40</u>에 둔다.</p> <p>2. “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”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<u>새롬1길 21-1</u>에 둔다.</p> <p>3. “홍은도담도서관”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<u>홍은중앙로 129</u>에 둔다.</p>	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독립문공원길 80</u> <u>(현저동)</u>-----.</p> <p>2. ----- ----- <u>증가로10길 16-15</u> <u>(남가좌동)</u>-----.</p> <p>3. ----- ----- <u>홍은중앙로 129(홍은동)</u>-----.</p>
<p>제10조(사용승낙의 취소 등)</p> <p>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승낙을 취소하거나, 제한·정지·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</u></p> <p>5. <u>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	<p>제10조(사용승낙의 취소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</p> <p>5. <u>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</u></p>

제17조(입관의 제한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
1.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, 전염병이 있는 사람
2. 음주자 또는 타인에게 위협·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
3.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관 거절이나 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17조(입관의 제한)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~3. <삭 제>

[별표1]

도서관 이용시간(제7조 관련)

구 분		평 일	토·일 요일
서대문구립 이진아기님 도서관	모자열람실 어린이열람실 <신 설>	09:00 - 18:00	09:00 ~17:00
	종합자료실 전자정보열람실 멀티문화감상실	○ 3월~10월 : 09:00 - 20:00 ○ 11월~2월 : 09:00 - 19:00	
남가좌새롬 어린이도서관	모자열람실 어린이열람실	09:00 - 18:00	09:00 ~17:00
홍은도담 도서관	모자열람실 어린이열람실	09:00 - 18:00	09:00 ~17:00
	종합자료실	○ 3월~10월 : 09:00 - 20:00 ○ 11월~2월 : 09:00 - 19:00	

[별표1]

도서관 이용시간(제7조 관련)

구 분		평 일	토·일 요일
서대문구립 이진아기님 도서관	유아열람실 어린이열람실 어울림누리터 (다문화자료실)	09:00 - 18:00	09:00 ~17:00
	종합자료실 어울림누리터 (전자정보열람실 멀티문화감상실 장애인정보누리터)	○ 3월~10월 : 09:00 - 20:00 ○ 11월~2월 : 09:00 - 19:00	
남가좌새롬 어린이도서관	유아열람실 어린이열람실	09:00 - 18:00	09:00 ~17:00
홍은도담 도서관	유아열람실 어린이열람실	09:00 - 18:00	09:00 ~17:00
	종합자료실	○ 3월~10월 : 09:00 - 20:00 ○ 11월~2월 : 09:00 - 19:00	

[별표2]

사용료 및 수수료(제11조 관련)

1. 사용료

구분	기준	금액	비고
다목적실	1회3시간	50,000원	다만, <u>문화교실 등 정규프로그램이 없는 시간대에 사용 가능</u>
문화사랑방	"	30,000원	
강의실	"	30,000원	
문화창작실	"	30,000원	

2. 수수료

구분	규격	금액 (1면당)	비고
복사 (전자복사기) 및 인쇄 (프린터기)	<u>B5</u>	<u>30원</u>	
	<u>A4</u>		
	<u>B4</u>	<u>50원</u>	
	<u>A3</u>		

[별표2]

사용료 및 수수료(제11조 관련)

1. 사용료

구분	기준	금액	비고
다목적실	1회3시간	50,000원	다만, <u>독서프로그램, 문화강좌 등 독서·문화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대에 사용 가능</u>
문화사랑방	"	30,000원	
강의실	"	30,000원	
문화창작실	"	30,000원	

2. 수수료

구분	규격	금액 (1면당)	비고
복사 (전자복사기) 및 인쇄 (프린터기)	<u>A4</u>	<u>30원</u>	<u>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이 직접 복사 및 인쇄</u>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  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도로명 주소 변경 및 사용승낙의 취소, 입관의 제한 내용 변경을 통하여 구민의 도서관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함.

4. 작성자

- 교육지원과 행정7급 김소연 (330-1966)

## 관계 법령

□ 도서관법[시행 2012.8.18, 법률 제11310호, 2012.2.17., 일부개정]

제43조(도서관의 책무)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·지역적·경제적·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도서관은 장애인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(이하 "지식정보 취약계층"이라 한다)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도서관자료의 확충,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
2. 교육·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
3.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,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
4.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
5.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